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관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설립목적)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고판매대행, 방송광고균형발전,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라
 -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(약칭 "KOBACO"라 한다)으로 표기한다.
- 제3조(사무소)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,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자본금) ①공사의 자본금은 3,000억원으로 하고,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.
 - ②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5조(공고방법)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kobaco.co.kr)에 이를 게시한다.

제 2 장 주 식

- 제6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등) ①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,000,000주로 한다.
 - ②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,000,000주로 한다.
- 제7조(일주의 금액, 주식 및 주권의 종류) ①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일만(10,000)원으로 한다.
 - ②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 - ③공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일(1)주권, 오(5)주권, 일십(10)주권, 오십(50)주권, 일백(100)주권, 오백(500)주권, 일천(1,000)주권, 일만 (10,000)주권, 일십만(100,000)주권의 9종으로 한다.
- 제8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공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 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 <개정 2019.4.3.>
 - ②공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 <개정 2019.4.3.>
 - ③공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2주 전에 미리 공고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

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

제 3 장 주주총회

- 제9조(소집) ①공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수시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소집한다. 단,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16조제4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.
 - ②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10조(회의 등)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. 다만, 사장의 유고시에는 제16조제4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 - ②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 -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경우에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주주는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전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 및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

고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⑥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와 지사에 비치 한다.

제 4 장 임원 및 직원

- 제11조(임원)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상임 감사 1명을 둔다.
 -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.
- 제12조(임원의 임면) ①사장은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가 복수로 추천 하여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 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.
 - ②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 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.
 - ③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

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.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1>

- 1.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) <신설 2022.12.21>
- 2. 3년 이상 재직 중인 공사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중에서 근로자 대표 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<신설 2022.12.21>
- ④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임명 한다.
- ⑤사장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제1항, 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
- ⑥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사람(이하 "노동이사"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4.10>
 - 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상 노동조합의 조합원
 - 2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2항의 근로자위 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

는 직

- 제13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공공사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에 관한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와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 단,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2.12.21.>
 - ②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추천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서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③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임원선임 등 필요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따르고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임기) ①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,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2 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하다.
 - ③사장이 연임되는 경우 경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계약안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 - ④사장은 상임이사와 체결한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평가결과와 그

밖의 직무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상임이사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.

- ⑤노동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하되, 제12조 제3항제2호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2.12.21.>
- ⑥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제5항에서 이동 2022.12.21.>
- ⑦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. <신설 2022.12.21.>
- 제15조(경영계약 등) ①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②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원 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 - ③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제2항에 의하여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한다.
 - ④사장은 제3항에 의한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

발생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⑤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.
- ⑥비상임이사와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.
- 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,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- ②사장은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에는 상임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.
 - ③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그 명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 - ④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규정으로 정한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, 선임자,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상임감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,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다
 - ⑥사장은 상임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 제17조(결격사유) ①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2.12.21.>
 - 1. <삭제 2022.12.21.>
 - 2. <삭제 2022.12.21.>
- ②임원이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<개정 2022.12.21.> 제18조(직원의 임면) ①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.
 - ②직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임원의 보수기준 등) ①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
 - ②사장,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와 직원에 대한 급여,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 - ③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.
 - 1. 사장 : 공사의 경영성과와 경영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
 - 2. 상임이사 :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
 - 3. 상임감사 :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
 -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이나 수당 등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

참여할 수 없다.

- ⑤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겸직금지) ①공사의 사장, 상임감사, 상임이사(이하 "상임임원"이라 한다)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- ②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 - ③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5 장 이 사 회

- 제21조(이사회 구성 등) ①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.
 - ②이사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하며,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 -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여 그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22.12.21.>
- 제22조(의결사항)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- 1.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
- 2.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
- 3. 결산
- 4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
- 5.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공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
- 6. 방송광고 요금의 변경 및 수수료 제도의 변경
- 7. 손익금의 처분
- 8.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·출연 및 채무보증
- 9. 정관의 변경
- 10. 사규의 제정과 변경
- 11. 임원의 보수
- 12. 다른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
- 13.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요청하는 사항
- 14. 그 밖의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중 이사회의 심의·의결 세부범위 및 기준은 이사회 의결로 관련 규정에 정한다.
- ③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국정감사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
- 2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(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)
- 3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3조(회의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장 이나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- ③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- ④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관련하여서는 「상법」 제391 조제2항을 준용한다.
 - ⑤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 및 결과, 반대하는 사람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상임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토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위원회) ①이사회는 의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특정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「상법」 제 393조의2(이 사회 내의 위원회)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6 장 사업범위 및 내용

- 제25조(사업)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9.4.3.>
 - 1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송광고의 판매대행
 - 2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 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
 - 3.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, 광고 표준화, 광고효과 측정, 광고 유통기반 구축·운영, 광고 관련 조사·연구·교육,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
 - 4. 시청점유율 조사·검증·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
 - 5.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
 - 6. 다른 법령에서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하는 업무 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
 - 7.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 - 가. 공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·운영
 - 나. 방송통신광고의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의 적립 및 관리·운용
 - 다.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투자
 - 라. 중소기업 광고마케팅 지원사업

마. 기타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
제26조(경영목표의 설정) ①사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, 제1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 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사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조직과 운영

제27조(조직과 운영) 공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8 장 회 계

제28조(회계연도)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제29조(회계정리 등) 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

따라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고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,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.

- 제30조(자금의 조달) 공사는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 - 1. 자본금과 적립금
 - 2. 제25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 - 3.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
 - 4. 자산운용수익금
 - 5. 국가보조금 또는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
 - 6. 그 밖의 수입금
- 제31조(수수료 등) ①공사는 위탁한 방송광고를 방송한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송사업자로부터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과 동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징수한다.
 -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탁수수료 중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과 동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를 의뢰한 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.
- 제32조(예산) ①사장은 경영목표와 기획재정부의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다음

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예산총칙
- 2. 추정손익계산서
- 3. 추정재무상태표
- 4. 자금계획서
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·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
- ③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공사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.
- ④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, 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공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 (이하 "준예산"이라 한다)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⑥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- ⑦공사는 예산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⑧공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이사

- 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7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한다.
- ⑨공사는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3조(결산) ①공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,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(이하 "회 계감사인"이라 한다)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
 - 2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
 - ②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3월 말일까지 주 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한다.
 - 1. 재무제표(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와 그 부속서류
- 2. 그 밖의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4조(손익금의 처리)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.

- 1. 이월손실금의 보전
- 2.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
- 3. 국고에의 납입
- 4.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
- 제35조(재산의 관리와 처분) 공사의 재산, 물품관리와 처분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9 장 보 칙

- 제36조(규정제정) ①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②제1항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범위는 이사회 규정에 정한다.
- 제37조(정관변경)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8조(해산) ①공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.
 - ②공사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.
- 제39조(경영공시) 공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
부 < 2012.5.23.>
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①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모든 재산과 채권·채무 그 밖의 권리·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 - ②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·의무에 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.
 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 - ④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다.
- 제3조(직원에 관한 경과조치) 공사의 설립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공사의 직원으로 보며, 종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의 고용관계를 공사가 포괄승계한다. 단, 해당 직원이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사규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규가 정하여 질 때까지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규를 준 용한다. 단, 공사 설립위원회에서 제정한 사규는 이 정관에 따라 공 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.

- ②제1항에 의한 공사의 사규 중 법령 및 이 정관에 저촉되는 조항은 그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- ③제1항에 의한 공사의 사규는 공사 설립 후 3월 이내에 정비·보완하여야 한다.
- 제5조(최초임원 경과조치) 공사 설립시 임명되는 최초임원(상임임원 및 비상임이사)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 중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6조(회계연도 경과조치) ①공사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공사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정부회계연도 말일까지로 한다.
 - ②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10조에 따라 해산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2012년 5월 22일 기준 결산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이사회가 심의·의결한다.

부 칙 <2019.4.3.>

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.

부 < 2022.12.21.>

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2조 제3항, 제13조 제1항, 제14조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4.10>

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.

공사 설립을 위하여 공사 설립위원 전원은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.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

위원장	홍성규 (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)	(서명)
위 원	김용민 (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)	(서명)
	윤석민 (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)	(서명)
	안정호 (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)	(서명)
	김용수 (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)	(서명)